

실천하는 애국!

---

# 제주4·3사건 정책제안서

---

2022. 07. 19.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제주4·3사건 정책제안서

## - 목 차 -

◆ 공문

◆ 추진배경

I. 목적

II. 4·3특별법 위헌성 제거

III. 4·3재판 위법성 제거

IV. 정부보고서 재작성

V. 제주4·3관련 공무원, 위원회 및 단체 위원 교체

VI. 결 론



힘내라! 대한민국!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수신 수신자 참조

제목 제주4·3사건 정책 제안서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역사와 법적 측면에서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제주4·3사건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공산 폭동·반란 사건입니다. 좌편향 세력은 4·3을 끊임없이 민중항쟁으로 둔갑시키고,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매도하여도 대한민국 입장에서 속수무책인 근본적 원인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왜곡, 4·3특별법의 위헌성, 법무부 및 제주지방법원의 위법재판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4·3분야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오니 모든 국가기관은 관련사항이 국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제주4·3사건 정책제안서 1부.  
2. 제주4·3사건 관련 소송서류 1부.  
2. 재심재판의 위법성 학술세미나 자료집 1부. 끝.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연구위원

김영중 고문	전 제주경찰서장
나종삼 고문	전 4·3조사위원
이황우 고문	전 4·3중앙위원, 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광덕 고문	전 4·3중앙위원, 전 국방대학원장, 예비역 육군 소장
강재문 유족위원장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대표
김재동 언론홍보위원장	대한역사문화원 원장
김학성 헌법수호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박철균 전문위원	故 박진경 대령 손자, 예비역 육군 준장
박홍균 전문위원	故 박진경 대령 유족회 사무총장
이승학 교육정립위원장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주천 역사수호위원장	전 원광대학교 역사학 교수
이희범 조직관리위원장	비상시국국민회의 공동대표
이희천 출판위원장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전민정 대표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수신자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국가보훈처,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법원,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청 등 14개 기관

기안 이희범

대표 전민정

협조

시행 4·3연대 - (2022. 7. 19.) 접수

우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6층 /

전화 (02)737-0403 홈페이지 jeju43.kr 이메일 info@jeju43.kr / 공개

**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다!**

## ◆ 추진배경 ◆

○ 한국사회는 좌편향 세력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국회는 왜곡된 역사를 4·3특별법에 수용하여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주의가 좌파에 의해 급속히 파괴되고 있어서 자유와 진실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주4·3공산폭동반란에 책임있는 반역자에게도 보상지시를 하였고 국회는 4·3특별법에서 이들을 희생자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제주지방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 4·3관련 단체와 문화는 좌파가 완전히 장악하여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어도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나라가 온통 좌편향으로 질주하는 상태다. 좌파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4·3대책 수립과 왜곡시정활동이 매우 시급하다.

### I

## 목 적

제주4·3사건을 전면적,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여 정의를 회복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수호한다.

### II

## 4·3특별법 위헌성 제거

### 1. 4·3사건 정의 재정립

#### 가. 4·3특별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나. 위헌성

4·3공산폭동을 항쟁으로 미화하기 위한 의도로 4·3의 기점을 1948년 4·3사건 1년 전에 있었던 1947년 3·1불법시위사건으로 소급하였고, 4·3폭동 반란의 주체인 남로당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무력충돌이라는 중립적 개념을 사용하여 공산폭동 반란을 은폐하고 있다.

#### 다. 개정안 제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5·1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1948년 4월 3일 남로당(공산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으로서 1957년 4월 2일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9년간 대한민국에 항적한 반란을 말한다.

4·3 사건 정의는 4·3의 원인과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정의 규정에 남로당(공산당)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이 반영되지 않은 4·3특별법과 역사교과서 등은 모두 개정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4·3특별법이 위헌결정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4·3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으로 발발한 계획적인 공산폭동반란이었다. 반란의 목적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에 있었다. 경찰의 탄압에 저항한 항쟁(봉기)이라는 주장은 선전용에 불과하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작성한 내부문건에도 4월 3일에는 사전에 조직된 무장대원 420명이 동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순수한 주민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은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자위대 등 주로 남로당(공산당)원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6만여명(4·3보고서는 6천명으로 왜곡)의 제주도 남로당원 지원하에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하고 심지어 국방경비대 제9연대까지 동원하여 일거에 제주전역을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 했다. 이런 계획이 성공했다면 제주도에서는 여순반란때와 마찬가지로



지로 단기간에 더 많은 우익인사가 학살되었음은 물론 한반도는 적화되었을 것이다. 제주도민 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남로당(공산당)에 의한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였으며 국군과 경찰은 이런 만행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좌익세력에 대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던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였다. 9년간 지속된 4·3반란은 소련과 북한의 공산화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정황적 증거들도 수없이 많다.

## 2. 4·3희생자 정의 재정립으로 보상대상 엄선

### 가. 4·3특별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나. 위헌성

제2조와 제5조 규정은 희생자 선정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유채한 희생자에 대하여도 보상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이자 평등권과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명백한 위헌이다.

4·3공산폭동·반란에 가담한 수형인, 사형수, 경미범죄자, 귀순자, 교전 중에 사살당한 자, 월북·도주 등으로 행방불명된 자 등 공산국가 건설을 지향하였던 자들과 그 밖에 보증인이 없는자, 자연사 한 자 등은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들이며 이러한 자들에 대한 일률적인 보상금 지급은 국가의 계속성과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특히 수형자에 대한 배·보상은 개별적인 재심을 통하여 무고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한 사람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재심절차에서 무고한 자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재심청구하면 100%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시행할 일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2조 2호에서 유책한 희생자는 보상대상으로서의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21년 2월 개정된 4·3특별법은 4·3수형자 등에게 명예회복 대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위헌규정을 신설하였다. 보상은 명예와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고, 헌법재판소가 2000헌마238사건 결정 당시 고려 또는 예정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보상은 무고한 희생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아무리 경미할지라도 수형자 등 귀책사유 있는 자는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점에서 현행 4·3특별법 제2조와 제16조는 개정전 4·3특별법상 모든 희생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규정이어서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정의관념에 위반, 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이러한 위헌규정은 희생자 개념을 잘못 유추한 오류에서 비롯된다. 즉 희생자 개념 재정립이라는 선결문제 해결을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는 명예나 보상이냐의 논점과 무고한 자에게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혼동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유책한 사람들에게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상황이 된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시 희생자 정의규정을 희생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그 개념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립하였어야 했다. **명예회복 문제와 보상의 문제는 논점이 다른 영역이다.** 명예회복은 경미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허용이 가능하지만, 보상은 귀책사유가 없는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면 그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보상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무고한 희생자인지 여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여 명백히 반역행위에 가담하였던 수형자 등에게 보상

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국민 법감정상 용납될 수 없다. 건국 이후 한반도를 공산화하여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남북한의 공산주의자에 의한 수많은 폭동 및 계털라전, 6·25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켜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어긋난다. 이러한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2,530명이 넘는 4·3수형자, 교전 중에 사살된 수많은 사망자, 사형수 등에게도 보상하기 위해 이들이 반역행위자가 아닌 국가폭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되는 방어적민주주의 헌법 하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한 유책한 희생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명확히 무고함이 입증된 희생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자 범위를 다시 정함으로써, 희생자 개념을 잘못 유추하여 법적용을 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 다. 개정안 제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로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무고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회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 희생자 보상 기준 원칙

-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한 자는 희생자에서 제외한다!
- 보상금은 무고한 희생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 위헌성을 제거하고 재조사하여 희생자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에서 4·3특별법이 위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명예회복과 보상의 대상에 따른 희생자 구분

근거 기준	대상 구분	귀책 정도에 따른 희생자 구분	검토 사항
<p>명예회복 (2000헌마238 헌재 결정)</p>	<p>명예회복 대상 ×</p>	<p><b>위법에 적극 가담한 4개 유형</b> 수피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체헌선거관 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등의 기우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회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적극 가담자에게는 교전중 사살당한자, 사형수, 수형자(일반/군사), 월북자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헌재판례변경 또는 판례 확대해석이 필요함</li> <li>• 2000헌마238 소수의견은 경미한 과오를 범한자라도 명예회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음</li> </ul>
<p>보상 (4·3특별법 제16조)</p>	<p>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인데 보상이 된 자</p>	<p><b>4개 유형 이외의 자</b> 무고한 희생자, 경미한 과오를 범한자, 단순 귀순자 등</p> <p><b>귀책사유가 있는 자</b> 교전중에 사살된자, 사형수, 수형인, 월북자, 행방불명인, 귀순자 등은 무고한 희생자가 아님에도 보상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판단으로 희생자 범위를 넓혀 놓은 명예회복 대상이 자동적으로 법적 보상 대상이 되었음</li> <li>• 심지어, 헌재 결정에서 명예회복 대상으로</li> </ul>

<p><b>위헌</b></p>		<p>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p> <p>귀책사유 등에 따라 희생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결과, 명예회복의 대상이 자동적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었음</p>	<p>인정될 수 없는 4개 유형의 적극가담자도 편향된 4·3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보상 대상 희생자가 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4·3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지원으로 2,530명의 수형자까지 특별재심을 통하여 배보상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고있음</li> </ul>
<p>보상 (법적용 원칙에 따른 보상)</p> <p><b>합헌</b></p>	<p>보상 대상 ○</p>	<p>명예회복 대상이면서 보상이 될 수 있는 자 무고한 희생자(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대상이 되는 희생자 범위를 새로 정해야 함</li> </ul>
	<p>보상 대상 ×</p>	<p>① 명예회복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보상대상이 될 수 없는 자 경미한 과오를 범한자, 단순 귀순자 등</p> <p>② 명예회복 및 보상이 모두 될 수 없는 자 2000헌마238사건에서 정해진 4개 유형, 월북자, 인민군 편입·일본으로 도주 등 행방불명자, 교전 중 사살된 자, 사형수, 보증인 2인 없는 자, 자연사, 원인규명 안된 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에 해당하는 자에 보상은 위헌임</li> <li>● 진상규명을 철저히 한 이후 보상해야 함</li> <li>● 희생자 정의를 새로 규정해야 함</li> </ul>

### 3. 특별재심의 위헌성

#### 가. 4·3특별법 규정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나. 위헌성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규정은 권력분립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과잉입법으로서 위헌이다.

제14조와 15조 규정은 건국 당시 대한민국이 나치수준의 불법을 했고 수형자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여 무죄라는 전제하에 재심을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공산반란을 진압하고 처벌한 군경의 일체의 행위를 나치가 학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북한의 주장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불순한 주장을 받아들여 따르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다.

4·3당시에 일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졌고, 얼마든지 군경의 행위에 법적 문제가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문제 제기할 수 있었던 사회 분위기였는데 70여 년이 지나 객관적 증인이나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유책 희생자 측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보상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기부정이자 국가 자해행위로서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규정은 국가가 자기방어를 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국가의 자기변호 권리를 박탈하여 국가에 자해를 강요하는 규정이다. 대한민국을 방어할 위치에 있는 검사가 자기부정을 하고 재심청구를 조력까지 하는 규정들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입법이다. 국가가 자기변호할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 스스로 자해하게 하는 위 규정들은 검사가 수형자(가해자)와 같은 편이 되어 국가를 공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한 세력에게 현행 형사소송법의 재심절차상 수형자의 재심개시결정이라는 관문통과를 면제해주고, 절차의 편의까지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한다.

검사가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상반)이며, 국가의 변호를 담당할 검사의 직무를 법률로 침해한 구조적인 법치파괴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누가 변호한다는 말인가? 제주법원의 위법한 재판 관행으로 보아 100% 무죄재판 수준이 예정되어 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산화가 된 이후에 있을 법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검찰의 적극적인 무죄구형 자행과 제주법원의 위법한 재심재판 등을 종합할 때 공산폭동·반란에 면죄부를 주고 국군과 경찰을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법 부당한 현실에 이의 제기하지 않고 묵인 동조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 다. 개정안 제안

- 4·3특별법 제14조 특별재심, 제15조 직권재심 규정 위헌결정 및 삭제
- 법무부 특별재심 권고 합수단(합동수행단)을 해체

### III

## 4·3재판 위법성 제거

#### 1. 주요 위법재판 현황

2017재고합4, 2019재고합3, 2020재고합1, 2019코11 등 다수 존재

#### 2. 위헌성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심재판, 형사보상,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형사보상결정 등은 모두 위헌·위법하게 이뤄지고 있다.

#### 가. 소송절차의 적법성

구속영장 발부없이 구속, 고문 등 적법절차 위반이었다고 하거나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판단은 원고(수형자)측 일방적 주장과 좌편향 정부보고서 만을 근거로 한다. 이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자료와 국가의 사법절차는 당시 적법하게 형사소송절차가 이루어졌고 명백하게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교정시설 수용요건(구 감옥법 제11조)과 검사의 형집행지휘 요건(구 형사소송법 소화23(1948)년 법률 제131호)은 판결문 등 적법서류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도 형집행지휘서와 수형인명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 나. 재심개시결정의 위법성

판사가 증거없이 위법하게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2조 단서를 위반한 것이고 재심개시결정단계에서 재심기각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사실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수형자)의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본안에서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게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또한 검사가 위법한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 ○ 학술세미나 개최 : 자료집 첨부

- 2022년 4월 1일 프레스센터 “4·3재심재판의 위법성 비판”
- 세미나 참석 5명의 학자 전원이 재심재판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함
- <https://www.youtube.com/watch?v=x4moOJBdFxc>

#### 다. 형사보상결정의 위법성

- 의용 형사소송법 제1조 및 형사보상사무취급규정 제1조1)는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 기준으로 무죄판결과 면소판결만이 되고 공소기각판결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형사보상결정을 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지도 않았음
-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법 문언과 그 법리에 반하여 과도한 일급(日給)을 적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주는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음

---

1) 1958년 형사보상법 부칙에 법 시행 전에 형사보상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도록 규정



## 라. 조치사항

-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사에 대하여 고발<sup>2)</sup>하여 2022. 4. 28. 대검찰청에서 재향고 기각결정되었으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준비중에 있음.
- 행방불명 수형자에 대한 무죄구형 검사, 무죄선고 판사 고발조치 예정임.

윤석열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법치파괴에 대한 사법정의를 회복하면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업적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임.

## 마. 제안

- 4·3위법재판의 재판무효화법률 정부안으로 발의
- 위법한 재심재판에 관여한 판·검사 등 직무범죄자 형사처벌
- 재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 기존의 재심재판 파기(청구인 법무부)
- 각종 4·3소송에서 법무부는 반드시 불복할 것을 지시  
(4·3국가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법무부는 부대항소 지시 촉구 등)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등 위반 추가 수사
-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남로당 입장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의견서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로 재작성하여 제출 (특별법 위헌 취지 반영)
- 현재에 제출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의견서 작성자 문책
- 거짓 희생자에게 지원한 지원금 및 수형자 배보상금 환수조치
- 법무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해체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회원단체는 4·3 가짜 희생자 3천명 명단을 파악하여 확보하고 있음. 명부 요청이 있으면 제출 가능. 또한 현재 희생자로 결정된 자 14,500여 명 중의 8천명 정도는 재조사 필요함

## IV

### 정부보고서<sup>3)</sup> 재작성

2) 법무부장관 박상기 등 고발장 참조  
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0년

## 1. 보고서의 문제점

정부보고서가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을 부인하는 것은 폭동지령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 등 정부측의 폭압에 주민이 항거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임. 정부의 정당한 진압을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탄압으로 인식하도록 왜곡하고 있음. 왜곡된 정부보고서가 법원, 국회, 정부 등에 좌파 주장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 노무현은 보고서 작성시 이념을 벗어나 진보학자들이 다루도록 지시<sup>4)</sup>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이념 헌법에 반하는 남로당 보고서가 된 것임
- 나. 전 서울시장 박원순의 만행 : 4·3전문위원회 등 구성 및 보고서 작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 우파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은 정부보고서 작성시 4·3부분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촉 계약서에 조건을 부가하여 제외시킴
- 다. 다수결의 횡포 : 우파가 제시한 보고서 수정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남로당의 보고서가 됨
- 라. 남로당 옹호하는 보고서 : 4·3원인은 민중봉기, 4·3성격은 통일운동으로 미화하고, 남로당 지령과 만행은 은폐하며, 군경의 강경진압만 부정적으로 부각하여 학살자로 매도하고 있음
- 마. 보고서 서문의 실토 : 서문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는 ‘보고서가 4·3의 원인과 성격 규정을 하지 않았고 후대에 미룬다’<sup>5)</sup>고 함으로써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상규명없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
- 바. 각종 4·3위원 구성의 좌편향 : 위원들이 좌파일색이고 종신직처럼 20여 년째 연임하면서 역사왜곡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2. 제안

- 가. 4·3정부보고서는 폐기하고 대한민국 입장의 4·3정부보고서 재작성 편찬
- 나. 좌편향된 4·3위원 임명철회 및 올바른 건국 역사관을 가진 위원 임명
- 다.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sup>6)</sup> 등 올바른 4·3시민단체의 4·3 통사 연구 및 출판사업 등에 국가재정 지원 필요
- 마. 교과서 집필지침을 개정하여 4·3역사왜곡 시정

4) 2003년 2월 25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12차 회의 3차 토의 회의록 1면

5)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서문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 집필 기준 제안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이념을 반영한다.
2. 4·3원인 & 성격은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공산폭동반란임을 명시하고, 남로당 지령 증거 및 만행을 반영한다.
3. 군경의 진압과 애국단체 활동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알린다.
4. 좌우에 공정성보다는 객관성과 정통성, 정체성에 주안점을 두어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기술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4·3진상규명은 4·3원인과 성격규정에 있고, 4·3당시 국무총리 기자회견, 포고령과 소개령, 선무공작 등을 바탕으로 강경진압의 정당성을 기술하여 정부의 제주도민 보호활동을 알린다.
6. 미군정의 한반도 자유민주국가화 전략과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전략을 대비시켜 미군정의 대한민국 산파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7.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념을 빼고 4·3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로 4·3진상보고서가 남로당보고서가 된 사실을 폭로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다시 기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8. 법치와 인권문제는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3주동자와 동조자 처리는 당시 인권수준에서 관대한 처벌이었음을 평가하여 과잉진압의 부정적 인식을 디톡스한다.
9. 제주4·3사건자료집 등에서 4·3의 진상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를 발췌하여 좌익계열의 문헌을 참고하여 왜곡된 정부보고서 비판에 활용한다.
10. 정부보고서 재작성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역량을 확보한다.

6) 본 단체는 정부보고서가 거짓되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입장에서 4·3통사를 집필하여 전국 도서관에 납본하고, 영문판을 유엔과 미국 정부 등에 제공하며, 정부가 왜곡된 정부보고서를 시정 및 재작성 시 본 단체의 연구성과를 제공하려는 목적하에 활동하고 있음

현 실	제 안
제주4·3평화재단 구성원, 4·3중앙위원회 등 위원들의 좌편향 일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중앙위원, 전문위원, 제주4·3평화재단 등 좌편향된 인사들을 전폭 교체</li> </ul>
4·3위원회의 반헌법적 결정 양산으로 가짜 희생자 등에 국가예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재심의</li> <li>● 가짜 희생자 등에 지급된 국고 환수 조치</li> </ul>
법무부 법무실(민변출신) 및 4·3합동수행단의 반역행위, 행정안전부 4·3사건 안전처리과, 제주도청, 제주교육청 등 좌편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편향성 공직자 문책, 교체</li> <li>● 이념 및 역사교육 철저히 좌편향성 시정</li> <li>● 반역행위자 지원하는 기구 철폐</li> </ul>
좌파위원들 주도로 부적격 희생자 양산, 평화공원 내 불량위패 설치, 제주 4·3역사 유적지 등에 반헌법적 왜곡조형물 등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 희생자 색출 제거, 불량위패 제거</li> <li>● 평화공원, 제주 4·3역사 유적지 등에 왜곡 조형물을 대한민국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조성</li> </ul>
4·3정부보고서, 청소년 역사교과서, 교육지침 등의 4·3왜곡과 좌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정부보고서 재작성</li> <li>● 역사교과서, 교육지침 등 전면 개정</li> </ul>
제주4·3시민단체들의 공격성, 육군장 1호 박진경 대령에 대한 철창감옥 설치 등 불법행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진경 대령 추모비 호국원 이장 및 평화공원 내 동상 건립</li> <li>● 제주4·3좌파 시민단체 사법처리</li> </ul>
4·3평화재단, 위원회, 4·3단체 등 정부 예산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감사 철저</li> <li>● 좌편향 단체에 정부지원 지양</li> <li>● 4·3을 바르게 연구하는 단체에 지원</li> </ul>

국가기관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정의를 회복한다.

1.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4·3특별법이 위헌결정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철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부역했던 남로당 추종세력에 대한 희생자 결정 취소 및 보상금 지원을 철회한다.
4. 4·3재심재판 등 위법한 재판을 즉각 중지시키고 특별법 제정 또는 재재심을 통하여 기존의 4·3재판을 전면 무효화시킨다.
5. 반역, 반법치, 반부패행위에 관여된 공직자 등 범법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한다.
6. 반역행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4·3정부보고서 재작성 등 4·3역사왜곡을 시정한다.
7. 4·3을 이용하여 이권을 누리는 좌익 카르텔을 파악하여 척결한다.
8. 좌편향 문화를 제거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9.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10. 대한민국 건국 방해사건인 4·3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 건국의 완성인 자유민주 통일로 가는 기반을 조성한다.